

의안번호	2214553
의 퇴 인	정점식의원
회 답 일	2026. 1. 30.
추계번호	25D64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의3(딜레마존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 신설	시·도경찰청장 등은 딜레마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량 예측 기반의 신호제어 시스템 도입, 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등의 설치 및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4조의4(예비 정지선의 표시 및 관리) 신설	시·도경찰청장 등은 교차로에서의 신호 변경시 차의 진행 가부를 판단하고 신호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예비 정지선을 횡단 보도 또는 교차로의 정지선 바깥쪽에 표시 및 관리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조의3(딜레마존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조의4(예비 정지선의 표시 및 관리) 신설	

III. 미첨부 사유

□ 딜레마존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안 제4조의3 신설)

- 개정안은 시·도경찰청장 등이 딜레마존¹⁾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량 예측 기반의 신호제어 시스템 도입, 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등의 설치 및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

1) 자동차 등이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 정지와 통과의 판단이 어려운 구간

- 현행법에 따라 황색 신호로 전환된 직후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처벌하는데, 현실적으로 운전자가 정지와 진행 사이에서 즉각적인 판단을 요구받는 딜레마존에서 운전자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 이에 개정안은 운전자의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차량신호등의 잔여시간 표시기 등의 설치를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
- 다만, 딜레마존 개선이 필요한 교차로의 수, 해당 교차로에 적용할 조치, 조치별 평균 설치 및 관리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경찰청은 딜레마존 개선을 위하여 2023년에 ‘차량신호등용 잔여시간 설치 시범운영’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경기도 평택시 등에 신호위반 예방을 위한 신호제어 시스템(딜레마존 진입 차량에 녹색 신호를 1~2초 연장)을 시범 적용한 바 있음

□ 예비 정지선의 표시 및 관리(안 제4조의4 신설)

- 개정안은 시·도경찰청장 등은 교차로에서의 신호 변경시 차의 진행 가부를 판단하고 신호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예비 정지선²⁾을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의 정지선 바깥쪽에 표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
 - 개정안에서 규정한 예비 정지선의 표시 및 관리 등을 기존 도로관리 관련 노면표시 개선 주기에 따라 수행할 가능성도 있으나, 별도의 사업으로 수행될 경우 추가적인 노면표시 사업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
- 다만, 예비 정지선의 표시가 필요한 교차로의 수, 해당 교차로의 규모, 노면표시 평균 사업량 및 사업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한국교통연구원 ‘2024년 한국형 회전교차로 정책연구 지원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신호로 운영되는 교차로는 약 58,000개로 추정되고 무신호로 운영되는 교차로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2)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에서 갑작스런 신호 변경시 급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위험을 저감하고 신호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의 정지선 바깥쪽에 긋는 선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